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이용별 장기요양 수가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5년01월01일 부로 1.89%추가인상(제도변경에따른안내문 참조바람)

(변경내용)

방문요양 (방문당)	2024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1.43%	11.44%	2.05%	2.15%	2.21%	2.13%

(세부내역)

구분	방문당시간	수가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방문요양 (방문당)	30분	16,940	2,541	1,524	1,646
	60분	24,580	3,687	2,212	1,474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3	4,981	3,321
	210분	61,670	9,251	5,550	3,700
	240분	68,030	10,205	6,122	4,081

(방문목욕)

구분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금	25년수가	25년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내)	84,670원	12,701원	86,480원	12,972원
차량이용(가정내)	76,340원	11,451원	77,970원	11,696원
차량미이용	47,670원	7,151원	48,690원	7,304원

제 4 장 요양급여제공절차 및 비용변경 방법

제16조

[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자 모집 및 이용절차]

1. 등급판정신청절차

- ① 신청(공단 각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2.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 ①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 ② 자원봉사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 간판 이용 광고효과
- ③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④ 가정방문상담
- ⑤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⑥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

제17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5장 21조]의 내용을 참고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 .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장 요양 급여내용 및 비용부담 규정

제19조[장기요양급여내용]

방문요양

-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 ☐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 인지관리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목욕(욕조사용), 일반목욕